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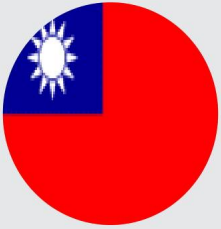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대만,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 개정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TBT

이슈 바로가기 ▶

-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의 영양 정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발표된 「포장식품 영양표시 준수사항」의 개정 초안을 공고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함
- 본 준수사항의 목적은 시행에 앞서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포장식품 관련 업계가 라벨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국민의 영양 현황을 고려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1) 적용 범위
 - 본 준수사항은 포장식품 표시의 영양표시에 적용됨
 - 특수영양식품*의 영양 표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본 준수사항의 규정을 적용함
(*) 특수인구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영양소를 조정해서 제조된 식품
 - 2) 주요 개정 사항
 - ① 개정 규정 2항: 본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
 - ② 개정 규정 3항: 본 준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③ 개정 규정 4항
 - 영양성분 함량 표시의 수치표시방법 추가
 - 섭취에 따라 보충 가능한 영양성분 표시 개정
 - 생리 기능 관련 영양성분 함량 표시 기준 추가
 - 요오드첨가염 표시 삭제
 - 표 7에 기재된 식품을 영양 표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경
 - ④ 개정 규정 5항: 섭취하기 전에 물을 첨가해야 하거나 희석해야 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측정 기준을 임의로 개정
 - ⑤ 개정 규정 6항: 새로운 액체 식품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텍스트 설명을 추가해야 함
 - ⑥ 표3, 표4 및 표7의 내용을 수정함
- 3)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처: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第二次預告修正「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草案, 2023.08.17

중국, 차와 영유아 조제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국가표준(GB)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023년 8월 1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과잉 포장 식품 및 화장품 제한 요구사항(GB 23350-2021)에 대해 차 및 영유아 조제식품에 관한 두 번째 수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 GB 23350-2021은 식품 및 화장품의 과잉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8월 발표되었으며, 이후 월병과粽(粽子)의 과대 포장 요건을 다룬 첫 번째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1) 적용 대상: 차, 영유아 조제 식품
 - 2) 주요 개정 내용
 - ① 포장 횟수:
 - 곡물 및 그 가공품, 차 품목은 3겹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품목은 4겹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포장 비용:
 - 판매 가격이 200위안을 초과하는 차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 비용의 비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찻잎의 포장재로 금속과 마호가니 원목 물질은 사용 불가
 - ③ 포장 공간 비율: 제품의 총 질량은 내용물 질량의 6배 초과 불가
 - ④ 차 및 영유아 조제 식품의 K(식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값 설정:
 - (*)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측정에 대한 보정 계수
 - 고행차: 9.0, 루즈 티(loose tea) 및 관련 제품: 13.0, 영유아 곡물 보조 식품: 4.5,
 - 영유아 과자 및 기타 영유아 곡물 보조 식품 :10.0, 영유아용 쌀과자류 20.0
- 3) 시행일: **2023년 9월 1일**
 - 모든 개정 사항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제공되나, K값은 개정안 발표 즉시 시행됨
 - 2021년 8월 10일 이전 시장에 출시되고 유통기한이 없거나 지나지 않은 식품은 계속 판매 가능



TBT

이슈 바로가기 ▶

출처: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公开征求对《限制商品过度包装要求 食品和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第2号修改单(征求意见稿)的意见, 2023.08.18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캐나다,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CED) 과다 섭취를 경고하기 위한 권고안 발표



SPS

이슈 바로가기 ▶

- 2023년 8월 21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CED) 섭취의 잠재적인 건강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품 라벨 등의 정보를 면밀히 살펴서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권고문을 발표함
- 캐나다는 2023년에 제품 라벨에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가 누락되거나, 제품 라벨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기되지 않아 총 20건의 에너지 음료에 리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1) 대상 품목: 카페인 함유된 모든 에너지 음료
 - 2)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 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
 - 캐나다 내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의 최대 카페인 함량: 1회 제공량당 180mg
 - 18세 이상 성인 기준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 4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14세 미만,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불면증, 과민성, 두통,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issues public advisory on caffeinated energy drinks, 2023.08.23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규제를 강화한 식품 규정 2건 발표



TBT

이슈 바로가기 ▶

-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청(NAFDAC)은 트랜스지방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첨가요건 및 트랜스지방의 라벨링 요건 등을 담은 「지방, 유지를 함유한 식품 규정 2022」와 「사전포장 식품 표시 규정 2022」를 검토 후 관보에 게재 함
- 주요 내용
 - 1) 배경
 -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질환(NCD)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식품 공급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TFA)의 퇴출을 권고하며 두 가지 정책 경로 중 하나를 실행할 것을 제안함
 - ① 모든 식품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된 TFA의 원천인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 ② 모든 식품에 산업적으로 생산된 TFA의 양을 함유된 총 지방 함량의 2% 이하로 제한할 것
 - 2) 새로운 규정 내용
 - 나이지리아는 ②에 따라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총 지방 함량의 2%(0.02ppm) 이하로 제한함
 - 전반적으로 트랜스지방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사전식품 포장 라벨링의 구성 및 내용을 강화
- ※ 2005년 대비 각 규정별로 추가된 항목:

「지방, 유지를 함유한 식품 규정 2022」	「사전포장 식품 표시 규정 2022」
7.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에 대한 표시 제한 및 주장 (1) 지방, 유지 및 식품의 영양적 효능은 표시사항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 및 다중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함량과 종류를 표시하여야 함 (2) 식용 지방, 기름 및 식품의 라벨에는 지방 또는 기름의 최대 0.02% 또는 200ppm 이하의 부틸화 히드록시아니솔 또는 부틸화 히드록시톨루엔(BHA 또는 BHT)이 표시되어야 함 (3) 트랜스지방 함량이 지방 또는 오일 100g당 2g을 초과하는 인간 소비용 지방, 오일 및 지방 및 오일 함유 식품은 나이지리아에서 금지됨 (4) NAFDAC의 승인을 받아 확인 및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랜스지방 및 무콜레스테롤 표시를 라벨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음	18. 영양정보 (4) 제품 100g, 100ml 또는 1회 제공량당 영양정보 또는 영양성분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a) 에너지 값(Kj/kcal) (b) 지방의 양(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명시함), 탄수화물을 명시한 설탕, 단백질의 양 (c) 소금 (d) 영양 또는 건강 강조 표시가 된 기타 영양소의 양 (5) 지방이 함유된 유제를 포함하여 지방 및 오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단독으로 또는 가공식품의 일부로 다음을 포함해야 함 (a) 지방산의 양이나 유형, 또는 콜레스테롤의 양: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중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그램(g)으로,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밀리그램(mg)으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은 그램(g)으로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 3) 위반 시 조치사항(규정문 참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며, 사업자 형태(개인 또는 기업)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NAFDAC, Speech By Prof. Mojisola Christiana Adeyeye on the Newly Gazetted Fats, Oil and Food Containing Fats and Oil Regulation 2022 & Pre-Packaged Food Labelling Regulation 2022 at Providence Hotel & Resort Ikeja Lagos-Nigeria 2023.08.07